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준혁의원·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79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김준혁·김대식·이수진

박희승 • 안규백 • 김영환

김재원 · 손명수 · 부승찬

한창민 · 김문수 · 박정현

강유정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문화·역사,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 명을 넘은 뒤 꾸준히 늘어나 2024년에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음. 높아진 국제 교류·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 육 분야의 질적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직된 조직·인사 운영에 따른 내재적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 등으로 국제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배치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어려운 구조임. 또한 글로벌 교육 선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화가 부족해 선진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화가 정

체되어 있음.

이에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고, 초·중등,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 거버 넌스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인으로서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 조부터 제5조까지).
- 나. 고등교육 해외진출 등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주요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다.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라.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 이용료・수수료 및 기타수입금으로 정함(안 제13조).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바.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개선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사. 재단은 사업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아. 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 금지, 한국국제교육재단 명칭 사용 금지를 정함(안 제23조, 제24조).
- 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안 부칙 제1조).
- 차.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설립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위원장: 교육부차관)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립국제교육원이 소재한 부동산은 한국국 제교육재단이 무상승계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한국국제교육재단에 무상양여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 파.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의 이사장은 종전 국립국제 교육원장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임하도록 함(안 부칙 제7조).
- 하. 책임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사람과 재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을 확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8조, 제9조).

법률 제 호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국제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교육 분야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등)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부속기관) ① 재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소 등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있다.
 - ②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조직에 관한 사항
- 7.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부속기관의 설치 및 부속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12. 법령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14. 주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교육 교류 협력 지원
 - 2.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국제장학 · 국제교류 지원

- 3.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지원
- 4. 고등교육 해외 진출 및 인적교류 지원
-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 6.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 · 운영 및 연구
-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지원
- 8. 위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조사 · 연구
-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
 - 2.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 3. 제4조의 부속기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
 - 4.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 5. 정관의 변경
 - 6.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7. 제19조의 사업계획서 및 제20조의 실적보고서
 - 8. 기부금품의 관리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 10. 그 밖에 이사장 및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2조(겸직제한) ① 재단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상임 임원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15조에 따른 이용료 수수료
 - 3. 그 밖의 수입금
- 제14조(출연금)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이용료·수수료 징수) 재단은 제6조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료,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기부금 등)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

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 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양여,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보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

- 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 지출의 결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감독 등)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와 개선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2조(인력의 파견요청) ① 재단은 사업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3조(비밀엄수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 제교육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설립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 시행일까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소재한 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35,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은 재단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립국제교육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 제6조(설립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설립 당시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재단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설립당시의 임원의 임명) 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재단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7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위원회가 선임한다.
- 제8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계속 유지하는 자와 재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재단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재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퇴직하고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재단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재단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9조(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정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 도의 재단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